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SEOU ACCOUNTING CORP. VIETNAM



개정국세 및 한·베조세조약 변경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대표이사 조성룡 공인회계사

May 2021

서우회계법인 소개

서우는 베트남내 조세/회계자문, 재무컨설팅, 회계감사 및 HR서비스를 전문으로 수행하고자 전문가적 실무경험을 축적한 한국회계사들과 베트남 회계사들이 4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과 활동하고 있는 Leading 중견회계법인입니다. 베트남 PwC 베트남에서 장기근속한 조성룡 대표회계사 및 Deloitte베트남에 근속한 이영동회계사, PwC베트남 김형준회계사를 중심으로 베트남투자 및 진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노이 본점(참빛빌딩 10층) 및 Saigon지점(CJ 빌딩 3층)에 각각 위치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회계사
(서우회계법인베트남 대표)

- Mobile Phone : +84 985487377
- Email : csrgs@seouvietnam.com
- 주소: 참빛빌딩 10층, 117 Tran Duy Hung, Hanoi city

김형준 회계사
(사이공 지점장, 한국 CPA)

- Mobile Phone: +84 90 247 7335
- Email : kimhj@seouvietnam.com
- 주소: CJ빌딩 3층, 6 Le Thanh Ton, HCM city
- Tel: +84 28-3636-4671

목차

주제	페이지
진출형태와 해당세목	4
개정국세/관세	9
한·베 조세조약 변경	17
FCT 과세	29

진출형태와 해당세목

베트남 진출형태

항목	FOE	Foreign contractor(F/C)
설립근거	Law on Investment, Law on Enterprise	F/C 설립 Circular
장점/단점	1.부동산시행프로젝트 및 합법적 사업의 수 행가능 2.다수 사업장 동시진행시 편리 -사업장간 결손금 사용 -사업장간 자금공유 -각 사업장마다 허가절차축소 3.VAS하의 회계/세무관리 4. 상법상의 외국법인 보호 5. 매년 1회 결산 및 사원총회를 거친 후 이 익배당가능함.	1.법인보다 간편한 설립 및 종결 2.사업장 종결 전에 수시로 이익금의 송금 가 능 3.초기자본금납입의 부담없음 4. 타사업장을 추가하기 위해선 반드시 별도 의 F/C허가 필요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산출소득(세법상 익급에서 손금 을 공제한 산출)에 현행법인세율 적용	FCT법상 산출하는 매출에 인정과세율(예,기 본건설용역 2-5%, 용역매출 5%, 재화의 공급 1%, 로열티 10%,기타 2%)적용
부가세법	부가세법상 매입부가세의 공제 항상 인정. 타 지방성의 건설사업시에는 매 출부가세 2%를 현장소재지에서 납부해야 함.	Withholding method의 경우 매입부가세 불 공제, 한시적인 PMO설립시 세무조사 위험 여전히 존재.

과실송금절차

항목	FOE	Foreign contractor
과실송금	<p>매년 결산 및 사원총회를 거친 후에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이익배당가능함 본사로부터의 차입금은 자금대여 약정에 의거 본사에 반환송금할 수 있음. 과실송금으로 배당을 선택시 배당에 대한 별도 원천징수세 없음.</p>	<p>외국인 계약자로서 본사로부터 수령한 단기차입금은 자금대여 서류를 증빙으로 모회사에 반환할 수 있음. 공사대금의 기성고는 해당 세금(FCT)으로 법인세율 2%/5%을 납부하고 본사에 수시로 송금이 가능함.</p>
외환거래	<p>건설대금 및 용역수수료는 VND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해외에 소재한 하도급업자나 Supplier에겐 외국환 금액으로 송금가능 함. 환위험에 노출됨.</p>	<p>해외구입자재 금액 해당액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USD 등으로 직접 외국인 계약자가 발주처로부터 수령할 수 있음.</p>

외국인계약자 진출형태로서 컨소시엄(BCC) 설립방안

항목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Unincorporated JV)	
의미	베트남의 BCC는 법인격없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공동사업약정입니다. 베트남은 컨소시엄 또는 Unincorporated JV라고도 칭함.	
회계법상 정의	Article 44, Circular 200/2014/TT-BTC	
BCC의 유형	별도기구로 구조화 되지않은 공동사업약정	별도기구로 구조화된 공동약정(Joint venture company는 법인으로 해당없음)
공동사업참여자에게 분배대상	프로젝트의 수익과 비용의 약정배분	프로젝트의 손익의 약정배분
BCC에 대한 법인세/부가세과세	공동사업약정에 의거한 공동사업참여자별 매출 및 비용 구분경리; 자산과 부채 구분경리; 공동사업참여자 개별로 외국인계약자세에 의거 법인세/부가세납부	별도기구인 joint operation board가 매출 및 비용경리;자산과 부채 계상; 회계감사보고서;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에 의거 납부

기업의 life cycle 별 주요 해당세목

회사설립

토지사용료

- 토지사용권에 대해

수입관세 및 부가세

- 기계장치류
- 수입원자재, 수입재화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

- 수입원자재 및 수입기계장치
- 수입된 서비스
- 로열티/기술용역대가
- 이자

회사경영

법인세

부가세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

특별소비세 등(해당시)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부담금

재산세

이전가격세제

회사종결

청산소득법인세

- 청산시점의 법인세 신고
- 청산배당은 비과세

지분양도소득세

- 매도자의 지분처분익의 과세

개정 국세/관세

개정 국세

사항	규정	개정 내용												
토지사용료 / 세금의 납부기한연장	Decree 52/2021/ND-CP	<p>Covid-19 pandemic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4월 19일 시행 Decree 52/2021/ND-CP에 의거 토지사용료 및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회사 및 개인자영업자로서 하기 업종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농업, 임업, 어업;식품생산과 가공, 방직,의류제조,피혁생산,목재생산, 제지업, 고무 및 플라스틱생산, 금속생산, 비금속생산, 금속처리 및 코우팅제조,전자제품, 컴퓨터 및 광학제품생산, 차량 및 전동기제조,건설업;출판,영화 TV영상제작, 음원제작;식료업;화학제조 및 화학제품생산;기계 및 설비 유지보수서비스 등 ✓ 유통 및 용역업:창고 및 유통업;호스피탈리티 서비스, 급식사업; 여행업,음반제작업 등;부품소재산업대상 업종회사;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table border="1"> <thead> <tr> <th>제조관련</th> <th>중기업</th> <th>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직원수</td> <td>100인이하이고</td> <td>10인 이하이고</td> </tr> <tr> <td>연매출</td> <td>500억동이하 또는</td> <td>30억동이하 또는</td> </tr> <tr> <td>총자산(*)</td> <td>200억동이하</td> <td>30억동이하</td> </tr> </tbody> </table>	제조관련	중기업	소기업	직원수	100인이하이고	10인 이하이고	연매출	500억동이하 또는	30억동이하 또는	총자산(*)	200억동이하	30억동이하
		제조관련	중기업	소기업										
		직원수	100인이하이고	10인 이하이고										
		연매출	500억동이하 또는	30억동이하 또는										
		총자산(*)	200억동이하	30억동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통 및 용역업</th> <th>중기업</th> <th>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직원수</td> <td>50인이하이고</td> <td>10인 이하이고</td> </tr> <tr> <td>연매출</td> <td>천억동이하 또는</td> <td>100억동이하 또는</td> </tr> <tr> <td>총자산(*)</td> <td>500억동이하</td> <td>30억동이하</td> </tr> </tbody> </table>	유통 및 용역업	중기업	소기업	직원수	50인이하이고	10인 이하이고	연매출	천억동이하 또는	100억동이하 또는	총자산(*)	500억동이하	30억동이하
		유통 및 용역업	중기업	소기업										
		직원수	50인이하이고	10인 이하이고										
		연매출	천억동이하 또는	100억동이하 또는										
총자산(*)	500억동이하	30억동이하												
<p>(*)출자금이란 일부 세무서의 의견도 있음.</p>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토지사용
료,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Decree
52/2021/N
D-CP

납부기한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납부(수입부가세는 납부연장 없음): 매월부가세 납부신고자는 3월 매출부가세부터 6월 매출부가세까지, 그리고 분기별 납부신고자는 1사분기와 2사분기 해당기간 매출부가세납부액을 납부기한 5개월 연장함. 7월발생 매출부가세 납부는 납부기한 4개월 연장과 8월발생 매출부가세 납부액은 3개월 연장함.
- 법인세 예납액: 2021년 1사분기와 2사분기 해당기간의 분기예납액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국가에 직접납부하는(민간공단업체 납부하는 사용료는 해당없음) 토지사용료로서 연납금액이나 2021년 상반기 납부기한 토지사용료를 납부기한 2021년 11월말까지 연장함.

연장신청절차:

납부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와 토지사용료 수납기관에 2021년 7월 30일 이내에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종속지점의 부가세 신고	OL 6146/CTHN-TTHT(국세청)	타 지방성에 설치된 종속지점으로서 월부가세 신고를 수행하는 지점은 자신의 선택하에 월별/분기별 부가세 신고를 해당성에서 신고함. 단, 2022년부터는 본점이 모든 지점의 부가세 신고를 합산하여 신고함.
타지방성 일시소득에 대한 부가세 신고	OL 7800/CTHN-TTHT(국세청)	타 지방성에서 일시소득을 가지는 회사는(예: 건설/설치현장, 급식업체 사업장) 해당 지방성에 2%/1%(매출부가세 5%업종인 경우) 매출부가세를 납부함. 단, 2022년부터는 본점 소재성의 관할세무서에 모든 부가세를 합산하여 납부함.
무상수입자재의 수입부가세	OL 6147/TCT-TNC (하노이 세무서)	FOC Goods(무상수입자재)를 수입하고 부가세 납세의무자인 회사는 해당 수입부가세를 납부한 후 회사의 기발생한 매출부가세와 공제할 수 있음. FOC Goods로부터 발생한 기타수입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임.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는 관할 세무서마다 의견이 다름.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법인세감면 대상인 종속지점의 법인세 신고	OL 1079998/CTHN -TTHT(국세청)	타 지방성에 설치된 종속지점으로서 법인세감면대상 업종인 종속지점은 2020년 12월 5일부터 본점과 별도로 소재지 세무서에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수행함.
세무서 승인 후 세금계산서 구입 및 발행시	OL 412/TCT-QLN(국세청)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행위로 인해 세무서 승인 후에 의무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엔, 즉시 세무서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8%를 납부해야 한다.
실행된 하자보수용역과 같이 제공된 재화의 FCT	OL8143/CTHN-TTHT (하노이 세무서)	실행된 하자보수용역과 같이 제공된 재화에 대해 외국인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구입자는 외국인계약자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함. 구입한 재화대금: 1%법인세, 수입부가세 납부; 하자보수용역료: 5%법인세, 5% 매입부가세 납부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COVID-19격리 및 방재비용	OL 5032/TCT-CS(국세청)	<p>외국인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부담한 호텔격리비용, 항공료, COVID-19진단수수료 및 COVID-19 방재비용은 회사에 적격증빙을 비치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인정됨. 반면, 해당비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급여소득으로 근로세 대상임. 지방성 세무서의 OL와 상이함</p>
소프트웨어관련 서비스의 FCT세율	Official Letter No. 3454/CT-TTHT (하노이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관련 서비스의 정의: Decree No. 71/2007/ND -CP에 의거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유통,유지보수, 개량관련 모든 서비스. • FCT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관련 서비스의 외국인계약자세율은 Circular No. 103/2014/TT -BTC에 의거해 매출부가세 면제, 법인세율 10%임(로열티수입으로 간주함). ✓ 기타 서비스는 매출부가세 5%, 법인세 5%로 간주함(용역소득으로 간주함). ✓ 이메일 도메인 제공서비스: 매출부가세 5%, 법인세 5%로 간주함(용역소득으로 간주함).

개정 관세

개정 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제조업 일부하 청시 및 부산물 관련 수입관 세	Decree 18/ND -CP (2021 년 4월 25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재화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관련하여 수입한 재화의 생산공정 중 일부를 외주를 주는 다음의 경우 수입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원재료를 하청업체에 반제품가공의뢰 후 완제품을 수입자가 생산하는 경우 ✓ 수입원재료를 수입자가 반제품생산 후 후속공정 반제품 가공의뢰 후 완제품을 수입자가 생산하는 경우 ✓ 수입원재료 중 <u>일부 수량을</u> 하청업체에 가공의뢰 후 완제품을 수입자가 수령 후 수출하는 경우 ✓ 수입원재료를 자회사(50%이상 지분율보유시)에게 가공의뢰 후 완제품을 수입자가 수령 후 수출하는 경우 • 관련 OL 879/TCHQ-TXNK(2021년 2월 23일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일부 하청의뢰 시 수입관세 면제됨 ✓ 세관조사전 회사: 관세청은 동 이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인정 ✓ 세관조사 과세결정 후 회사: 동 이슈에 대해 기납부한 관세는 과다납부 관세의 처리에 따라 후속 환급처리. 수입부가세는 관세청이 추후 부가세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할 것임.

개정 관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제조업 일부하청시 및 부산물관련 수입관세	Decree 18/ND- CP (2021년 4월 25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가공업자의 수입원재료 재화의 부산물, 폐기물을 베트남내 매각하더라도 수입관세 면제됨(과거엔 LOSS 3%에 한해서만 수입관세 면제) • 제조업체의 수입원재료 중 실재로 증빙으로 확인되는 폐기처분한 물량은 수입관세 면제 • EPE기업은 반드시 물리적 담장과 지정된 재화 입/출구를 설치하며 재화의 이동을 12개월동안 기록할 저장 화상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하고 세관과 정보공유하도록 설치해야 함.
EPE 공장/사무실 건설시 수입한 재화에 대한 수입부가세	OL 395/TC HQ- TXNK (관세청)	<p>건설회사는 EPE내 공장/사무실을 건설하기 위해 수입한 재화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에 수입부가세를 면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자재목록에 EPE 건설용 해당 수입재화 목록을 관할 세관에 통지; • 건설회사가 직접 수입자로서 수입후 EPE로 이송되어야 함. • E13(EPE고정자산구입용 수입신고서)으로 수입신고서가 완료되고 세관에 신고되어야 함. <p>상기 조건 미충족시 수입부가세를 납부 후 EPE건설 완료 후에 수입부가세는 환급대상임.</p>

한·베 조세조약 변경

한베 조세조약 신/구 조항 비교

항목	신 조항	구 조항
발효일	2021년 1월 20일	1994년 5월 20일
조세조약 대상 조세 (제2조)	<p>가. 대한민국에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및 (3) 주민세 (4) 농어촌특별세(이하"한국의조세"라한다.)</p> <p>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법인소득세(외국인계약자세의 법인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 "베트남의조세"라한다.)</p>	<p>가. 대한민국에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및 (3) 주민세 (이하"한국의조세"라한다.)</p> <p>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및 (3) 이윤송금세 (이하 "베트남의조세"라한다.)</p>
영향	<p>농어촌특별세도 한국의 조세로 포함되므로 이중과세 방지 대상 조세임. 베트남의 조세상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를 법인소득세 및 외국인계약자세 중 법인세금액으로 변경함</p>	

한베 조세조약 신/구 조항 비교

항목	신 조항	구 조항
사업이윤 (제 7조)	<p>가. 2017년 11월 21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조약 모델의 제 7조에 대한 주석서 제 36항 및 제 37항(*)의 해석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p> <p>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회계나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조세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유사한 기업들의 통상적이윤을 적절히 고려하여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정사업장의 이윤결정이 이 조에 명시한 원칙과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 해당 조항은 6개월이상 존속하는 건설현장 등에 대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고 고정사업장내에서 실행된 서비스, 재화제공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지국에서 과세됨을 규정함.</p>	N/A
영향	<p>베트남 역외에서 외국인계약자가 수행한 재화제공 및 용역에 대한 베트남내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소재 재화공급자와 용역제공자에 대한 베트남내 비과세 대상여부; • 외국소재 건설/설치회사가 수행한 재화제공 및 용역의 베트남내 과세소득 대상여부 <p>베트남내 조세에 대한 간주과세권 강화</p>	

한베 조세조약 신/구 조항 비교

항목	신 조항	구 조항
국제해운 및 항공운수 (제 8조)	<p>제 8조 국제해운 및 항공운수 ~</p> <p>3.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은 재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 •관리 또는 임대가 경우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994.09.09]</p> <p>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p> <p>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영향	<p>국제운수회사의 국제운수소득 거주지국 과세 규정 ; 컨테이너의 일시적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권 명기; 관련 OL: 포워딩비즈니스 관련으로서, FCT cir. 103관련 official letter (Official Letter No. 5335/CTHN-TTHT : inbound international forwarding service(베트남항 포워딩서비스): 역외거주지국에서 과세; outbound internaltional forwarding service(해외항 포워딩서비스): FCT 과세</p>	

한베 조세조약 신/구 조항 비교

항목	신 조항	구 조항
이자 (제 11조)	<p>3. 구조항과 동일.</p> <p>다만, 대출의 경우, 면세되는 이자는 앞서 언급된 기관들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대출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로 한다.</p>	<p>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p>
영향	<p>대상면제 대출이자에 대해 국책은행 및 정부기관 계좌가 직접 송금 실행해야 할 의무 신설.</p>	

한베 조세조약 신/구 조항 비교

항목	구 조항
사용료 및 기술용역 대가 (제12조)	<p>제12조 【사용료】 [1994.09.0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5%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5%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인 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지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한베 조세조약 신/구 조항 비교

항목	신 조항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 (제 12 조)	<p>제12조【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p> <p>1. ~ 지급되는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p> <p>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p>가. 사용료의 경우</p> <p>(1)특허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총액의 5%</p> <p>(2)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총액의 10%</p> <p>나.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그러한 대가 총액의 7.5%</p> <p>3. ~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대가"란 그 지급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수행된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모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인의 직원에게 지급된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p> <p>4. 구 조항과 동일</p> <p>5.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p> <p>6.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의 지급액이, ~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p>
영향	<p>기술용역대가(기술용역서비스 및 기술지원서비스 포함)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이 아니라 제 12조 사용료소득에서 규정함.</p> <p>기술용역대가는 베트남내 고정사업장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권은 지급지인 베트남에 주어짐.</p> <p>기술용역대가의 최고세율은 7.5%로 하향조정함.</p>

사용료/기술용역대가의 베트남세법 규정과 비교

FCT circular 103/2014	한·베 조세 조약	Cir. 205/2013(조세조약 해석 시행규칙)
<p>사용료: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의 이전이나 사용할 권리 및 기술 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민법, 기술이전법과 관련규정에서 명기된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기술이전료에 지급하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선, 10%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됨. 기술이전법은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를 기술이전대상이라 정의함.</p> <p>기술용역대가의 별도구분이 없이, 설계서비스, Technical training service나 시운전 서비스를 용역소득으로 간주하고 5%의 원천징수율 적용함. 반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함.</p>	<p>사용료의 정의 (제 12조 제3항)</p> <p>기술용역대가의 정의 (제 12조 제3항)</p>	<p>사용료: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설계,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비밀공식, 산업적.상업적.학술적장비의 사용,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를 사용할 권리 및 이전에 대한 대가</p> <p>기술용역대가: 조세조약에 근거해, 기술용역대가는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모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인의 직원에게 지급된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p>
<p>사용료 소득: 10%; 기술용역대가: 정의 없음; 용역소득: 5%</p>	<p>상한세율: 사용료: 5%/10%; 기술용역대가: 7.5%</p>	<p>한·베 조세조약을 따른다.</p>

용역사업소득 vs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

항목	용역소득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
해당 조세조약	제 7조	제 12조
대상	영리용역제공 대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사용료나 기술용역대가
베트남 과세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지에서 FCT과세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지에서 FCT 과세
고정사업장	<p>제 5조에 의거해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p> <p>~</p> <p>3. 건축장소, 건설또는설치공사는 <u>6월을</u>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p>	
예시	소프트웨어관련 서비스 중 이메일 도메인 제공서비스; 기술지원료;건설설계;시운전/직무훈련 서비스	소프트웨어관련 용역료; 소프트웨어 판매 및 사용료; 기술이전/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이전 및 사용료
베트남세법 FCT	법인세 5%; 매출부가세 5%	법인세 10%, 매출부가세 면제/5%

한베 조세조약 신/구 조항 비교

항목	신 조항	구 조항
양도소득 (제13조)	<p>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주식/지분가치의 50%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동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p> <p>5. 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지분을 제외한 다른 주식/지분이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지분참가비율 15%이상 소유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해당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p> <p>6. 제 1항부터 제 5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p>	<p>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p> <p>5. 제1항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p>
영향	<p>주식/지분양도소득의 베트남 과세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을 15%이상 양도시 항상 베트남에서 과세; • 특수관계자간 매각가격 및 외국소재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각가격 정상가격 산정 필수; • 주식/지분가치 중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50%이상의 산정문제 	

양도소득세(지분양도시)

Risk 가 높은 자본양도 거래

세무 risk 가 높은 자본양도거래에 집중 (예: 양도차익이 없거나 낮은 거래/ 상당한 채무를 이전하는 자본양도거래)

세무감사 목적으로 자본양도 거래들을 List up

2016년부터 세무 감사/조사 목적으로 집중 검토됨. 2017년부터 집중 강화함.

세무조사 대비방향

- 조세조약 상 양도소득 면제절차 수행(해당시);
 - ✓ 부동산과다법인 여부검토
 - ✓ 거주자증명원 및 신청서류 준비
 - ✓ IRC 및 ERC 상 소유자변경절차 완비
- CAPT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양도소득세 매도자는 과거 취득비용 근거필요
- 지분 양도소득 신고서, 지분매각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특관자간의 거래시 양도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유하여야 함(예: 제3자로 부터 평가 보고서(Valuation report))

한베 조세조약 신/구 조항 비교

항목	신 조항	구 조항
정보교환 (제 26조)	3.일방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의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 2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N/A
혜택의 제한 (제28조)	이 협정의 다른 모든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협정의 혜택을 얻기 위함이면, 타방체약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조세의 경감이나 면세를 부여하지 않는다.	N/A
영향	양국가간의 조세정보 교환의 의무 강화: 조세조약 남용시, 예컨대 실질적 수혜자가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당 조세조약 적용 배제	

FCT 과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FCT 대상:

이자, 배당, 지적재산권의 사용료, 각종 사용료대가, 외국계약자에 지급하는 수수료, 국제리스계약, 보험/재보험의 대가, 항공및 국제 운송서비스, 증권의 매매 및 베트남에 수입된 재화와 관련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적용된다.

- ✓ **배당소득**

외국법인의 배당결정액에 대한 해외송금시 원천징수세금은 없음.

- ✓ **이자소득**

해외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해선 5%의 원천징수의무가 베트남 소재 이자비용부담자에게 부과됨. 외국정부나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은 관련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사용료소득**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기술의 이전에 대한 로열티 수입에 대해선 10%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됨

✓ **외국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

외국인 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베트남내 법인과 계약하는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법적 실체를 세운 외국법인과의 수수료에 과세됨.

• **FCT 비과세:**

단순한 재화의 수입공급,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되고 소비된 서비스,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된 다음 서비스(수리, 교육, 광고, 판촉활동)은 FCT면세대상임.

조세조약상의 면제(감면)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조약이 FCT에 우선하여 적용됨.

과실송금의 근원거래	송금형태	법인세(CIT)	부가세(VAT)
자본금 납입(<i>Charter capital contribution</i>)	배당(Dividend)	면제	면제
차입금 대여(Loan)	이자(interest)	5%	면제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사용료, 기술이전료 (<i>Transference of technology or sublicensing of IP</i>)	로열티수수료	10%	5%/면제
마케팅대행 또는 지원서비스 (<i>Sale commissioning</i>)	사업소득수수료	5%	5%
경영지원서비스 (<i>HR, R&D, ERP Set up 및 유지보수, technical support 서비스, 차입보증대행서비스등</i>)	사업소득수수료/ 로열티수수료	5%/10%	5%/면제
베트남으로의 각종 재화의 공급과 함께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재화의 수출; 해외기업(매도자)이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전달과 관련한 운송부담/위험을 지는 Inco terms 조건(예, DDP, DAT or DAP)	재화판매대금	1%, 단, 재화판매 대금과 서비스 수수 료가 계약서상 구분 되지 않으면, 2%(설 치용역인 경우), 기타 시운전, 교육서비스 의 경우 5%로 증가함	수입자가 수입부가세를 납부할 경우 면제됨

과실송금과 관련조세조약

•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베트남내 과세시 활용

- ✓ 조세조약의 원천지국 면제조건 검토

예로서, 건설현장에서 수행되지 않은 사업소득 베트남에서 비과세, 국책은행
이자소득의 비과세

- ✓ 과실송금시 제한세율 적용가능성 검토(사업소득/기술용역대가)

•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한국과세시 활용

-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조약 제23조에 근거해 베트남내에서 납부한 조세는 한국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세법규정에 의거함.

-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사항없음.

FCT 세무조사 이슈사항

• 건설 및 설치업 관련

√ 법인세부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용인정여부(Cir 103상 하도급업자 및 하도급업무내용 본 건설계약서에 명기의무 화됨. 단순한 건설자재 및 설비, 소모품비 구입은 하도급계약금액 아님. FCT적용세율 과대적용(단순재하청 건설업의 FCT세율 5%)

해외에서 수행된 설계, 자문용역, 재화수입에 대한 FCT과세권 주장(조세조약 적용검토 필요)
계약금액의 업무별 계약금액 미구분시엔 최대 세율 적용함.

√ 부가세부분:

매출부가세의 발행시기

공사소모성자재(예컨대, 연료, 시멘트, 석재등) 소비의 업무관련성 입증여부:

매입부가세의 공제여부(예컨대, 다음의 비용인 골프비용, 직원 주택수당, 내부회식비, 세금계산서는 있으나 소명불비 접대비등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 로열티수입 간주로 고율 과세경향

• 국내이동 재화수출입거래, 수입재화 및 설치용역 및 D-term거래에 대한 재화구입금액 FCT 과세